공 제 회 칙

2023.12.01(개정)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이 회는 브이티더블유 공제회(이하"본회"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업무)

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경조와 이재의 공제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.

제 2 장 회원 및 회비

제4조 (회원)

본회의 회원은 브이티더블유에 상시 근무하는 모든 임원과 직원으로 한다.

제5조 (가입 및 탈퇴)

본회의 가입은 브이티더블유 입사 시 2개월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, 퇴직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제6조 (기금)

본회의 기금은 회비로 충당하며 회비는 매월 별첨 1 의 기준에 의한 일정액을 급여지급 시에 일괄 공제한다.[별첨 1]은 전기의 결산 및 잉여금 정도를 감안하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 (출연금)

브이티더블유는 본회에 출연금을 기부할 수 있다.

제 3 장 경조금 및 퇴회금

제8조 (경조금)

- 1. 회원에 대한 제 3 조의 경조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은 [별첨 2]과 같다. 다만, 회원가입 후 6개월 이내에 경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 금액의 1/2를 지급한다.
- 2. 본회의 회원은 개인별로 별도의 경조금을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 (경조사유의 신고)

경조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[별첨 3]의 양식에 따라 신고한다. 다만 명백히 그 사유가 인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있다.

제10조 (경조금 청구권의 소멸)

경조금의 청구는 경조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 한다. 단, 출산휴가 후 복직하였을 경우는 복직일로부터 60일로 한다.

제11조 (퇴회금)

회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본회를 탈퇴하는 때에는 본회의 잉여금에 대하여 그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12조 (운영위원)

- 1. 본회에는 회장 1인, 총무 1인, 감사 1인을 둔다.
- 2. 회장은 임직원으로서 대표이사가 선임하며, 공제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3. 총무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지정하며,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① 공제기금의 징수 및 관리
 - ② 경조사유의 접수 및 공지
 - ③ 경조금의 지급 및 지급증빙의 관리
 - ④ 본회의 결산

제13조 (운영위원회 결의사항)

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기본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공제회칙의 개정
- 2. 공제회비의 결정
- 3. 결산승인 및 잉여금의 처분

제14조 (감사)

대표이사는 감사로서 공제회 운영의 회칙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.

제 5 장 결산

제16조 (결산)

본회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년 1회 결산을 행하여 회원 결산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.

제17조 (기금의 운영)

- 1. 본회의 기금은 은행에 예입 관리한다.
- 2. 기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회원에게 일시 대출할 수 있다.
- 3. 일시대출의 한도는 월정 급여액을 한도로 하여 이율은 시중은행 금리로 한다.
- 4. 3항의 대출금은 대출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12 개월 내에 반제 하여야 하며 월정 급여액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리금을 공제한다.
- 5. 퇴직 등의 사유로 퇴회하는 경우 회수되지 않은 4 항의 대출원리금은 급여 또는 퇴직금 등의 지급액에서 일시에 차감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회칙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회비의 징수는 2002년 1월 급여 지급 시부터 징수한다

제3조 (개정)

본 회칙은 2016년 11월 11일에 개정됨.

제4조 (개정)

본 회칙은 2018년 11월 1일에 개정됨.

제5조 (개정)

본 회칙은 2023년 2월 1일에 개정됨.

제6조 (개정)

본 회칙은 2023년 12월 1일에 개정됨.

[별첨1] 회비의 징수 기준

연봉	금액	
1억원 이상	48,000원	
9천만원 이상	30,000원	
7천만원 이상	21,000원	
5천만원 이상	16,000원	
5천만원 미만	12,000원	

[별첨2]

공제회 지급 규정

경조사	지급대상자	지급액	제출서류
결혼	본인	50 만 원	청첩장
	자녀	50 만 원	청첩장 및
			가족관계증명서
	형제, 자매	10 만 원	청첩장 및
			가족관계증명서
칠순(만 70 세)	부모, 배우자의 부모	10 만 원	가족관계증명서
팔순(만 80 세)	부모, 배우자의 부모	10 만 원	가족관계증명서
구순(만 90세)	부모, 배우자의 부모	10 만 원	가족관계증명서
조 의	본인	200 만 원	사망진단확인서
	배우자	100 만 원	가족관계증명서
			및 사망진단확인서
	자녀	50 만 원	가족관계증명서
			및 사망진단확인서
	부모, 배우자의 부모	50 만 원	가족관계증명서
			및 사망진단확인서
	조부모/외조부모	30 만 원	가족관계증명서
			및 사망진단확인서
	형제, 자매	30 만 원	가족관계증명서
			및 사망진단확인서
출 산	본인	10 만 원	
돌	자녀	10 만 원	가족관계증명서
			(또는 주민등록등본)
입학	자녀	10 만 원	가족관계증명서
(초,중,고, 대)	기니		(또는 주민등록등본)

^{*}칠순 만70세, 팔순 만80세, 구순 만90세를 기준으로 한다.

^{*}회원 가입 후 6개월 이내일 경우 50%만 지급한다.

^{*}명절(설,추석)에는 공제회 잔액이 지급 가능할 경우 회원에게 10만원이내에서 상품권(선물)을 지급할 수 있다.

^{*&}lt;mark>공제회는 경조금 신청서 전자결재(파일첨부 必) 완료 시 개인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.</mark>